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26 발의연월일 : 2025. 5. 8.

발 의 자:배준영·강선영·김교흥

정일영 • 윤상현 • 허종식

박충권 • 박준태 • 조지연

유용원 • 이인선 • 모경종

김 건 의원(13인)

제안이유 주요내용

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,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,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하려는 것임(안 제2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0425호),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422호), 「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 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427호), 「유류오염손 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423호) 및 「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42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제3조를 삭제한다.
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지방법원"을 "해사법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
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
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책임제한사건의 관할) 책임	제2조(책임제한사건의 관할)
제한사건은 책임을 제한할 수	
있는 채권(이하 "제한채권"이라	
한다)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(船	
籍) 소재지, 신청인의 보통재판	
적(普通裁判籍) 소재지, 사고	
발생지, 사고 후에 사고선박이	
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	
권에 의하여 신청인의 재산에	
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	
된 곳을 관할하는 <u>지방법원</u> 의	<u>해사법원</u>
관할에 전속(專屬)한다.	
제3조(책임제한사건의 이송) 법원	<u><삭 제></u>
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	
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	
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책임제	
한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이나	
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	
지의 관할 법원 또는 동일한	
사고로 인하여 생긴 유류오염	
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	
계속(係屬)하는 법원에 이송(移	
<u>送)할 수 있다.</u>	